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2
----------	------

제출일자 : 2018. 12.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진료비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진료환경 변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제증명 종류 및 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행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진료비 감면 대상 추가(안 제14조)
- 나. 진료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발급하지 않는 제증명 종류 삭제 및 증명 발급 수수료 현행화(안 제12조, 별표 2)
- 다. 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 조항 정비(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별표 3)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17. ~ 11. 6.(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 대하여는 1회 방문 당 진료비와 수수료의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징수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타 법령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 각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용료 또는 수수료 감면”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 65세 이상인 자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가진 사람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는 관내 주민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해당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진료비 면제 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2] 개정안

○ 증명 발급 수수료 (제 12조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1. 건강 진단서	1통	500
2. 운전면허 적성검사	1통	500
3. 의료기록사본(x-선)발급	1통	3,000
4. 증명서 재(추가)발급	1통	500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별 표 3] 개정안

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 (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항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	치아당	5,000	관내주민 (비보험 적용 치아)
	불소도포	1회	5,000	관내 주민
	광중합을 이용한 충전(충치)치료	치아당	10,000	
	치면세마	1회	10,000	
2.골밀도 측정	골밀도 검사	1회	10,000	관내 주민
			5,000	관내 주민 중 1.만 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 대하여는 1회 방문 당 진료비와 수수료의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징수한다.
제10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10조(타법령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기타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가 제8조에 따른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과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삭제 ③치과진료중 치아홈메우기(보험적용 치아를 제외한 치아)수가, 불소도포 수가,광중합을이용한충전치료 수가, 치면세마 수가는 【별표 3】 과 같이 징수한다. ④기타 검사수가는 【별표 4】 와 같이 징수한다.	제11조(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현행	개정안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 ② (생략) ③ <u>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등 관계 법령에 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u>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삭제></u>
제14조(<u>사용료 또는 수수료감면</u>) ① (생략) ② <u>노령환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본군에 주소를 둔 65세이상인 자가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u>	제14조(<u>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u>)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u> 1. 만 65세 이상인 자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가진 사람
<u><신설></u>	③ <u>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는 관내 주민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해당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진료비 면제 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별표 2】 (개정 2002. 5. 20)

제 증 명 발 급 수 수 료 (수 가 기 준)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1. 일반진단서	1통당	500원	
2. 특별진단서	"	2,000	요양신청, 상해진단, 병사동, 상해진단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	5,000	
4. 근로자건강진단서	"	500	
5.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5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	2,000	
7. 사망진단서	"	500	
8. (공무원)채용신체 검사서	"	500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보건 의료법에 해당
9. 운전면허 적성검사	1통당	500	
10. 의료기록사본(X-선필름) 발급	1통당	3,000	14X17인치
11.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	300	
12. 각종 증명서 1통초과 발급	"	100	

【별표 2】

○ 증명 발급 수수료

| (단위: 원)

구 분	기 준	금 액
1. 건강진단서	1통	500
2. 운전면허 적성검사	1통	500
3. 의료기록사본(X-선필름)	1통	3,000
4. 증명서 재추발급	1통	500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별표 3】 (개정 2015.7.30.)

치 과 진 료 수 가 기 준

(단위: 원)

종 목	진 료 내 용	수 가 결 정 액	
		기 준	수 가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치아를 제외한 치아)	치면 열구전색	치아당	5,000
볼소도포	볼소도포	전악 1회	5,000
광중합을 이용한 충전치료	충치 치료	치아 당	10,000
치면세마	치면활택술	전악	10,000

【별표 3】 개정안

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 (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항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	치아당	5,000	관내주민 (비보험 적용 치아)
	볼소도포	1회	5,000	관내 주민
	광중합을 이용한 충전(충치)치료	치아당	10,000	
	치면세마	1회	10,000	
2. 골밀도 측정	골밀도 검사	1회	10,000	관내 주민
			5,000	관내 주민 중 1만 65세 이상인 자 2.강제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현행		개정안	
[별표 4] (신설 2000. 12. 11)		<삭제>	
기타검사 수가기준			
검종	검내지	수가기결정액	비고
공민등록증	공단공증 검사	10,000원	수수료 50% 감액대상자 1. 관내 주소로 둔 65세이상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 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 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일부 감면
3. 군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